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75호로 2022년 3월 10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4조)
-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 제12조)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3조 ~ 제16조)
- 라.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등 (안 제17조 ~ 제27조)
- 마. 비용의 보조 등,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안 제28조 ~ 제2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3. 8.~ 3. 14.)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보육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2021. 12. 7.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의 안건 심사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의무 규정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와 제20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존 시설에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27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 2020. 12. 29.)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또한 2006. 6. 26. 제정된 본 조례는 5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이를 새로운 체계로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

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⑤(생략)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③(생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④ (생략)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 ③ (생략)

##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476호로 2022년 3월 10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명시 (안 제1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5조)
- 다.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3. 8.~ 3. 14.)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음.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에서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